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53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문진석 · 이재관 · 권향엽
윤호중 · 홍기원 · 김종민
김교홍 · 김문수 · 조인철
이정문 · 박수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2조).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등록”을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02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전단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를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은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으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 제26조, 제27조 -----

-----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은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으

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
판”으로-----